

# 老人의 自立性 側面에서 본 老人住宅의 分類

— 各國의 관련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

Classification of elderly house focused on the self-support of the aged

— By analysing of data of the aged from several countries —

崔 貞 信\*  
Choi, Jung Shin  
申 京 珠\*\*  
Shin, Kyung Joo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support basic data for developing elderly house in Korea by classification of elderly house of several countries including Korea. Data analysed in this study are references about elderly house in home economics, architecture, sociology, thesis, plans and pamphlets of elderly house.

Elderly house in our country should be developed to fit our conditions of the elderly, so it can be classified four types such as 3 generations sharing house, self-supporting elderly house, self-supporting elderly house with aids and facilities for the aged.

## I. 序 論

### 1. 研究目的

最近 老人人口의 증가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도 高齡化 社會로 접어들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老人福祉의 일환으로 老人住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본

\* 정희원, 聖心女子大學 가정관리학과 조교수  
\*\* 정희원, 漢陽大學校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연구는 老人住宅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을 高揚시키고, 우리나라의 老人住宅 開發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우리보다 앞서 노인주택을 개발한 先進諸國의 관련자료를 중심으로 老人住宅의 種類와 現況을 파악하고, 이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부합시켜 再分類함으로써 추후에 우리나라에 적합한 노인주택의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그 개발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研究方法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각국의 문헌과 통계자료를 분석방법에 의했다. 관련자료로는 家政學, 建築學, 社會學 分野에서 老人住宅에 관계된 單行本 30편(東洋書/西洋書 17/13편), 論文 46편(35/11편), 政府에서 刊行된 통계자료 13편(10/3편), 노인관련 관계기관의 통계자료 4편(3/1편)과 그외에 평면집 및 각종 노인주택 팸플릿 등을 수집 분석하였다.

# II. 本 論

## 1. 노인주택의 분류

老人住宅의 종류는 각국 노인의 居住形態, 老人福祉體制, 老人扶養에 대한 意識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우리나라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상황이 다른 西歐와는 다른 시각에서 연구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각국의 연구자들은 노인주택의 종류를 住居團地의 集中과 分散, 費用의 多少, 年齡別 統合과 分離, 設備의 良好와 不良, 生活의 自立과 依存 등의 관점에서 분류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필자는 노인의 自立 정도에 중점을 두고 3代同

居住宅, 老人自立生活住宅(老人專用住宅), 援助自立生活住宅(노인홈), 施設住居(너싱홈)의 4가지로 재분류하여 이들 노인주택별로 서술하고자 한다.

## 2. 3代同居住宅

3代同居住宅은 노인과 기혼자녀 부부 및 손자녀의 直系 3대가 함께 居住하는 住宅으로 노인과 기혼자녀와의 同居率이 높은 우리나라(노인의 기혼자녀와의 동거율 54.8%,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5)와 日本(56.5%, 후생성 통계정보부, 1985) 등의 東洋圈 국가에 많다. 3대동거주택의 類型은 노부모와 자녀의 兩世代가 同一住宅內에 거주하는 同居型, 2채의 주택에 따로 거주하는 隣居型과 近居型으로 나눌 수 있다. 同居型은 동일주택내에서 老父母와 子女世代와의 空間의 分離 정도에 따라 다시, 거의 모든 공간을 共有하는 共同型, 世代別 필요공간을 일부 분리하는 折衷型, 대부분의 공간을 분리 사용하는 分離型으로 분류된다. 자료입수가 가능한 우리나라와 일본의 3대동거주택을 살펴보면(표1)과 같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주택에서 거주하는 3대동거주택 이외에 건설부와 주택공사가 住宅難이 심각한 서울에서 木洞, 上溪洞 등에 동거가족을 위한 동거주택의 개발과 건설을 시도하고 있으나 초기 단계이고 일본의 경우, 公營, 公團, 公庫住宅에서 동거주택을 개발 공급하고 주택자금도 융자해 주고 있다. 兩國에서 모두 동거가족에게 3대동거주택의 入住우선권의 혜택을 주고 있다. 3대동거주택의 평면은 최소 3LDK 이상으로 하고 최소한 개인실과 생리위생 공간은 世代別로 分離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표 1〉 우리나라와 일본의 3대동거주택

내용	국가	우리나라	일본	비고
	유형	同居型	기존주택, 3대동거주택(공동형, 절충형, 분리형)	
	隣居型	제주도의 "안거리-밖거리형"	동일부지내 별도형, Pair주택	2채의 주택
	近居型	자동차로 1시간이내의 거리에 거주		
세대별 공간분리		개인실분리, 생리위생공간 일부분리		
건설시행연도		1985년(목동), 1988년(상계동)	1973년이래 계속시행	
공급체		서울특별시-목동 주택공사-상계동	公營-건설주택의 1%가 동거용 公團-동거용, 노인전용주택(Pair주택) 公庫-동거주택에 할증대부	
공급호수		목동 877호 (88년 현재) 상계동 540호	공원 7595호 (81년 현재) 공고 96007호	
입주우선권		있	없	
평면형		최소 3LDK이상 개인실, 생리위생공간분리	3LDK-4DK 개인실, 생리위생공간, 수납공간분리	
면적		30-35평, 45평, 55평		

- 자료 한국 : 건설부·주택공사(1987), 목동아파트 분양안내서, 상계동 주공아파트 분양안내서, 신경주·최정신(1989).
- 일본 : 佐佐木ひろみ(1984), 村上良知(1984), 건설성·주택금융공고, 주택·도시정비공단 조사, 1981.

### 3. 老人自立生活住宅

老人自立生活住宅은 노인이 다른 사람의 助力 없이 家事를 처리하며 완전히 自立해서 생활하는 주택으로, 이는 주로 기혼자녀와 별거하며 노부부끼리 여생을 보내는 것이 規範化되어 있는 西歐(有配偶 老人의 80% 정도, 無配偶 老人의 60% 정도가 老人單獨世帯 구성)에 많다. 老人自立生活住宅의 類型은 노인들만 分離되어 住宅團地를 구성하는 集中配置의 경우와 젊은이들과 함께 섞여 구성하는 分散配置의 두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예로는 노인용 아파트, 슬럼호텔(slum hotel, 취사공간이 없으므로 식사는 買食에 의존함), 公營住宅, 公團住宅(mobil home), 연금수혜자 주택, 플레트리트

(flatlet), 플랫(flat), 방가로(bungalow) 등이 있다(표 2). 이의 공급은 주로 정부나 비영리단체에서 맡아서 하고 있다. 노인자립생활주택의 평면은 노인의 노동력을 절약하기 위하여 원룸(one room)형이나 거실침실형(bed-sitting room)이 獨身者用으로 많이 쓰이고, 夫婦用으로는 1침실형이 많다.

### 4. 援助自立生活住宅

援助自立生活住宅은 일반적인 看護만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의 共用住宅으로, 이도 역시 西歐에 많다. 援助自立生活住宅은 크게 居宅保護(Home Care Service)와 노인홈에의 入住로 나눌 수 있다. 居宅保護는 노인들이 자기의 주택

〈표 2〉 각국의 노인자립생활주택의 종류

국가 내용	일 본	미 국	영 국	북구제국	서 독	프 랑 스
주거유형	소규모집중형주택 (過疎地) 노인용아파트 (대도시)	슬럼호텔(Slum Hotel) 공영주택(Public Housing) 공원주택(Mobil Home)	플래트리트(Flater) 방가로(Bungalow) 플래트(Flat)	연금수혜자주택-스웨덴 노인용고층아파트-노르웨이 소규모 저가 임대주택-네덜란드 노인공용주택, 노인특별주택, 연금수혜자주택-덴마크	연금수혜자주택 (Pensioners Dwellings)	노인공영주택
공급체	市政府 민간차지단체	HUD(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정 부	정 부	정 부	정 부
구조	저층, 고층	고층, 단층	고층, 단층소주택	고층, 2층, 고층의 1층	고층, 2층, 단독주택	고층의 1층
평면형태	OneRoom형 (독신노인용)	공영주택: 침실 2-3, 욕실, 부엌 슬럼호텔: 부엌없는 침실 공원주택: OneRoom형	플래트리트: 침실 1, 욕실, 부엌 방가로: 침실 1, 욕실, 부엌 플래트: 침실 2-3개, 욕실, 부엌, 거실, 식당	OneRoom형 침실 1, 거실, 부엌, 욕실		침실 1-2, 욕실, 부엌
거주자의 특성	60세이상, 친족이 없는 노인세대 (여자 50세이상)	슬럼호텔, 공영주택: 저소득 층 노인 공원주택: 노동자 계층 은퇴 노인				
단지내 규모	아파트 1동에 10호 정 도 분산배치	185세대(빅토리아 플라자의 경우)	12-30호		8-25호(소규모) 100-150호(대규모)	

· 자료 일본: 小川裕子(1984)에서 재구성, 일본 건설성, 주택금융공고, 주택·도시정비공단조사, 1981.  
미국: Johnson, Sheila(1971), Carp, F.M.(1976).  
북구제국: 스웨덴 국립연구소 통계, 1981, J. David Hoglund(1985).

에 거주하면서 가정살림을 조력해 주는 가정 봉사원(home helper)의 도움을 받는 방법으로 낮 동안에는 데이 케어 센터(day care center)에서 醫療나 개인상담, 여가 프로그램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體制이고, 노인홈은 여러가지 편의 시설이 갖추어진 주택에서 거주하는 방법이다. 노인홈의 유형은 비용의 지불상태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無料 노인홈, 輕費 노인홈, 有料 노인홈으로 분류된다(표 3). 無料 노인홈은 무의탁 노인을 위하여 정부 및 비영리 단체의 보조에 의해 운영되는 형태이고, 輕費 노인홈은 入任을 희망하여 거주하는 사람들이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정부나 비영리단체에서 이의 일부를 보조하는 형태이며, 有料 노인홈은 영리 단

체가 설립하고 입주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형태이다. 노인홈의 거주자는 무료나 경비 노인홈을 제외하고는 비용지불이 가능한 고소득층의 노인이 많고, 연령은 老人自立生活住宅 居住者보다 전체적으로 높다. 定員은 대개 50명 내외의 少人員으로 하여 家庭의 분위기에 가깝게 하고 있다. 費用은 韓貨로 월 15~50만원 수준이나 北歐諸國은 年金에 의해 운영되어 개인부담이 없다. 원조자립생활주택에는 노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여러가지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공동취사가 많으므로 부엌은 없거나 소형이고 목욕시 보조를 필요로 하므로 공동욕실을 두는 경우가 많다. 평면형은 독신자용으로 원룸형이 많고 부부용은 1침실형이 많다.

(표 3) 각국의 원조자립생활주택의 종류

내용	국가	우리나라	일 본	미 국	영 국	스 웨 덴	덴 마 크	서 독	네덜란드	비 고
내용 설명	원조자립생활주택 (A.B형) 有料노인후 住(甲・乙型)	원조자립생활주택 (A.B형) 有料노인후 住(甲・乙型)	원조자립생활주택 (A.B형) 有料노인후 住(甲・乙型)	원조자립생활주택 (A.B형) 有料노인후 住(甲・乙型)	원조자립생활주택 (A.B형) 有料노인후 住(甲・乙型)	원조자립생활주택 (A.B형) 有料노인후 住(甲・乙型)	원조자립생활주택 (A.B형) 有料노인후 住(甲・乙型)	원조자립생활주택 (A.B형) 有料노인후 住(甲・乙型)	원조자립생활주택 (A.B형) 有料노인후 住(甲・乙型)	원조자립생활주택 (A.B형) 有料노인후 住(甲・乙型)
장기/단기	장기(1년)	장기(1년)	장기(1년)	장기(1년)	장기(1년)	장기(1년)	장기(1년)	장기(1년)	장기(1년)	장기(1년)
입주율(%)	0.01	0.10	0.15	8.50	3.00	6.00	2.00	10.50		
공급액	사회복지법인 미영리빙인	각양자치복지당 국, 민간, 민간부 지법인	미영리빙회, 소규모영리민간인 자	지방자치체주택당 국, 미영리주택협 회	지방자치복지당 국, 미영리복지당 회	지방자치복지당 국, 미영리복지당 회	지방자치복지당 국, 미영리복지당 회	지방자치복지당 국, 미영리복지당 회	지방자치복지당 국, 미영리복지당 회	지방자치복지당 국, 미영리복지당 회
가주자의 특성	부요 : 65세 이상 부외약자 부요 : 65세 이상 건강, 미용저분 가능약자	경비 : 65세 이상 저소득층노인 부요 : 65세 이상 고소득층노인	경비 : 65세 이상 저소득층노인 부요 : 65세 이상 고소득층노인	경비 : 65세 이상 저소득층노인 부요 : 65세 이상 고소득층노인	경비 : 65세 이상 저소득층노인 부요 : 65세 이상 고소득층노인	경비 : 65세 이상 저소득층노인 부요 : 65세 이상 고소득층노인	경비 : 65세 이상 저소득층노인 부요 : 65세 이상 고소득층노인	경비 : 65세 이상 저소득층노인 부요 : 65세 이상 고소득층노인	경비 : 65세 이상 저소득층노인 부요 : 65세 이상 고소득층노인	경비 : 65세 이상 저소득층노인 부요 : 65세 이상 고소득층노인
장원(㎡)	30-50	50-100	50-100	30-50	50-70	40-20	50-75	30-50 (스위스)	30-50 (스위스)	
방 면 적 부 분	침실+거실 침실+거실	OneRoom형 침실+거실	OneRoom형 침실+거실	OneRoom형 침실+거실	OneRoom형 침실+거실	OneRoom형 침실+거실	OneRoom형 침실+거실	OneRoom형 침실+거실	OneRoom형 침실+거실	
동선 부 분	6.6m(전용부부) 9.9m(전용부부)			34m 39m	44m 54m	50	30-40 35-45	30 55	20-40(스위스) 30-40(스위스)	
비 용	부요 : 모순금 500만원, 월18 -24만원	경비 : 월 약50만 원 (112000엔) 부요 : 월 약75만 원 (170000엔)	생활보호 : 연180 만원 (300달러) 은퇴후 : 연300- 480만원 (6000-8000달 리)	OneRoom형 침실+거실	OneRoom형 침실+거실	연급	연급	연급	연급	연아



## 5. 施設住居

施設住居는 長期間 또는 晩性的인 看護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 老人病院이나 nursing Home)에서 居住하는 것으로 老人福祉體制가 발달된 北歐諸國에 많다. 老人病院은 일반병원에 老人病科를 따로 두어 晩性的의 老人性 疾患만을 치료하는 병원이고, nursing Home은 이와 비슷하나 病院의 분위기 보다는 家庭의 분위기를 가질 수 있도록 계획된 형태이다. 북구제국에서는 노인아파트(노인자립생활주택)－노인홈(원조자립생활주택)－nursing Home(시설주거)이 3段階 老人居

住施設(Three Step Project)로 되어있어 노인의 自立 정도에 따라 다음 단계로의 계속적인 이용이 보장되어 있으며, 비용은 국가에서 年金으로 지불되므로 경제적 부담도 없다(표 4). 이의 공급은 미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영리단체에서 운영) 대부분 정부나 비영리 단체에서 맡아서 하고 있으며 노인홈의 수보다는 적다. 이 곳의 거주자들은 원조자립생활주택의 거주자들보다는 연령이 높고 비용도 노인홈보다 많아 韓貨로 월 50만원 이상이다. 북구제국의 nursing Home은 최고 수준의 우수한 시설과 충분한 직원을 확보하고 있다.

(표 4) 각국의 시설주거의 종류

국가	우리나라	일 본	미 국	영 국	스 웨 덴	덴 마 크	서 독	스 위 스	핀 랜 드
유 형	주간호 주거	노인요양시설 양호노인홈 평민양호노인홈	하숙집 보호시설 중간적보호시설	레지덴셜홈 (Residential Home, or Old Peoples Home)	레지덴셜호텔 (Residential Hotel)		Altenheim	Altersheim	
	간호주거	복합양호노인홈	nursing Home (Nursing Home)	노인병원 nursing 노인병원	nursing 노인병원 정신병원	nursing 노인병원	Altenkram- kenheim	Spital Fur Chronich- kranke and Geriatrishe Klinik. Akuts- pital	nursing
공급수(年)	10개(87) 687명	양호 : 944개 (85) 66452명 특별 : 1619개 118959명 평민 : 235개 38427명	2300개(76) 120만명	nursing Home 50000 명 전체병원의 25%가 65세이 상의 노인	45000명(80)	NH 1400개(82) 노인병원 22개			
入所率(%)	0.002	1.02	5.00	3.50	5.00	7.00	1	4-5	10
거주인의 특성		65세이상인자. 저택에서 양호 가 관련한 노인	75세이상의 노 인이 많다.	임소자의 35% 가 85세이상	80세이상 노인 이 많다.	80세이상 노인 의 1/3이 NH 에 거주함			
비 용		월75만원(15만 엔) 자기부담	월48만원(800달 러), 국립NH는 의료보험, 자선 단체 기부금.		임원시 7리크네 (1달러), 나머지 는 연금	연금			

자료 한국 : 보사부,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8조, 경제기획원, 총인구 및 주택센서스, 1985.

일본 : 小川裕子(1984), 일본통계연감, 총무청 통계국, 1987.

스웨덴 : 스웨덴국립연구소 통계, 1981.

미국 : Palmote, Erdman(1976), Manard, Barbara B. and Cary S. Kart(1976), Williamson, J., Munley, A., Evans, L.(1980).

기타 : 高阪康次(1984), 木下武徳(1972).

### Ⅲ. 結 論

앞서 분류한 4종류의 노인주택 중 우리나라에 現存하는 것은 3대동거주택과 원조자립생활주택 중 무료 노인홈과 이제 시작 단계에 있는 유료 노인홈 뿐이며 이의 숫자도 외국에 비하면 극히 적은 실정이다. 그러나 老人住宅의 개발은 각국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발달되어 왔으므로 모든 나라에 통용되는 해결책은 찾기 어렵고, 각국의 老人扶養體制와 居住者들의 價値觀 및 경제사정에 따라 그에 적합한 노인주택의 종류와 運營體制가 정비되어야 하며 모든 노인에게 그 혜택이 부여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노인주택의 개발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언할 수 있겠다.

첫째, 우리나라에서는 핵가족화의 꾸준한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체 노인의 50% 이상이 기혼자녀와 동거하고 있어 3대동거가 주류가족체제 중의 하나이며 노인복지체제가 미비한 관계로 현시점에서 실질적으로는 가족차원에서 노인부양이 해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현시점에서 당분간은 이들 3대동거가족을 위한 3대동거주택의 개발과 보급이 우리나라 노인주택의 공급에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야 한다고 본다.

둘째, 최근 산업구조의 변화와 노인부양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인하여 일부에서는 老夫婦 또는 獨身老人의 家口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老人單獨家口 비율 20%,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5). 그러므로 이들 老人單獨家口를 위한 老人自立生活住宅의 開發이 단계적으로 시도될 필요가 있겠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노부부가 생존해 있을 때에는 노인단독세대를 구성하다가도 독신노인이 되면 다시 3대동거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므로 이를 감안한다면 老人自立生活住宅은 夫婦用을 중심으로 공급하되 獨身者用을 일부 첨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셋째, 원조자립생활주택은 현재 무료 노인홈

(무료 양노원)에 대해서는 일반인의 인식이 나쁘고, 유료 노인홈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노인들의 경제적 능력이 약하므로 일부 고소득층의 노인을 제외하고 널리 보급되기에는 좀더 시일이 필요하리라 본다. 그러나 비용의 일부를 보조받는 輕費 노인홈은 자녀와의 동거가 어렵고 自己管理의 능력이 弱화된 노인들을 위하여 지금부터 일부 그 개발을 시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경비 노인홈의 비용은 노인부양가족이 지불하며, 그 지불액수는 노인홈의 시설수준에 따라 差等을 둘 수 있겠다.

넷째, 너싱홈은 우리나라의 현 실정에서는 노인복지체제의 미비로 그의 개발과 공급이 어려우나, 자녀와 동거하면서도 長期的인 看護를 필요로 하는 寢床老人의 경우, 가정에서도 扶養家族들에게 노인간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정간호 제도 등의 형태로 그 도입이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위를 종합하면 우리나라에서 바람직한 노인주택의 개발방향을 국가차원의 복지정책이 안정되기까지는 가족차원에서 이를 해결해야하므로 우선은 3대동거주택 위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와 함께 이 단계로 부부용의 노인자립생활주택의 공급을 도입하며, 다음으로 비용을 보조받는 경비 노인홈도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1. 建設部, 住宅公社, 3대가족형 공동주택 개발연구, 1987.
2. 김태현, 한국에 있어서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2.
3. 민경애·김혜정, “3세대 가족형 공동주택 계획에 관한 기초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25권 1호, 1987.
4. 박재간·임춘식, “한국노인의 생활과 의식 구조에 관한 실태조사”, 「한국노인문제연구



- 소], 창간호, 1981.
5. 신경주·최정신, “3대동거형 아파트의 입주후 실태분석”, - 상계지역의 경우 -, 「대한가정학회지」, 제27권 3호, 1989.
  6. 서의택·박태환, “서구의 노인독립주거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제28권 120호, 1985.
  7. \_\_\_\_\_, “서구의 노인홈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제29권 123호, 1985.
  8. 최정신, “노인주거에 관한 이론적 고찰”, 「성심여대 논문집」, 제21집, 1989 :
  9. 한국인구보건연구원, 한국노인의 생활실태, 1985.
  10. \_\_\_\_\_, 노인단독가구 실태조사, 1988.
  11. 경제기획원, 인구 및 주택센서스, 1975, 1980, 1985.
  12. \_\_\_\_\_, 한국의 사회지표, 1988.
  13. \_\_\_\_\_, 사회복지시설조사, 1988.
  14. 목동아파트 분양안내서.
  15. 상계동 주공아파트 분양안내서.
  - 16.有料 노인홈 “유당마을” 안내서.
  17. 보사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8조.
  18. 上子武次, “老人의 家族生活의 型”, 「日本의 老人 3, 老人と 家族의 社會學」, 那須宗一·増田光吉 編, 垣内出版株式會社, 1972 : 100-141.
  19. 佐佐木 ひろみ, “同居世帯, - この 住生活の 種種相”, 「老人と 生活空間」, 高阪謙次 編 ミホルバア書房, 1984 : 94-116.
  20. 高阪謙次, “ヨーロッパの 老人住宅, 居住施設と この 體系の 方向”, 「老人と 生活空間」, ミホルバア書房, 1984 : 249-289.
  21. 建設省·住宅金融公庫, 住宅·도시정비공단조사, 1981.
  22. 총무청 통계국, 일본통계연감, 1985.
  23. 일본중앙복지자료.
  24. 스웨덴 국립연구소 통계, 1981.
  25. Ernst Anderson, Institutions for the Elderly, Present State and Development Trends, Danish Medical Bullentin. Vol. 29, No. 3, 1982.
  26. Meeks, C.B., Housing, Prentice-hall. Inc., Englewood Cliff, N.J., 1981.
  27.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Estimate and Projections as Assessed in 1982, Population Studies, No. 86(New York: U.N. 1985).
  28. Williamson. J. B., Munley, A. and Evans, L., Aging and Society, Holt, Rinehart and Winston, 1980.